

##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요건

구분	세부내용
인력기준 ※ (가, 나 각각 보유)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시설기준	사무실 및 장비실
장비기준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갈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⑥ 습윤장치

※ 인력기준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말함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의무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작업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 서류 보존(30년간 보존)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3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기준(0.01개/cm<sup>3</sup>)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등 조치를 계속하여야 함.

## ▶ 증명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 ▶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석면 농도 측정 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

## 4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 교육

구분	교육 종류	교육 시간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자과정	18시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18시간

※ 고시 시행 이전 3년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석면조사자 및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교육"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 고시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는 www.molab.go.kr 에 올릴 예정임

## 2009년 8월 7일부터는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 석면조사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이 수행
-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노동부 등록업자가 수행
-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사전 신고 의무화
- 석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 문의처



근로자건강보호과 ☎ 02) 6922-0956, 0960



작업환경팀 ☎ 032) 5100-718, 720

## 2009년 8월 7일부터는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 석면조사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이 수행
-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노동부 등록업자가 수행
-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사전 신고 의무화
- 석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 1 석면조사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가 있음

### ▶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가스킷,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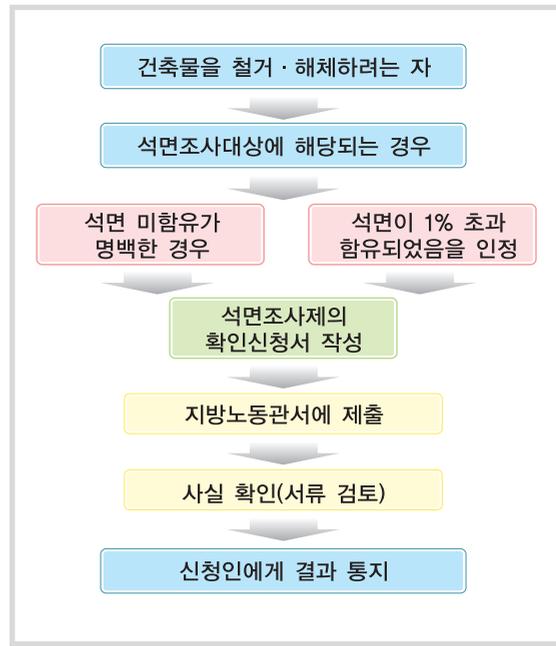
### ▶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 석면조사 생략 사유

- ①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②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②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만이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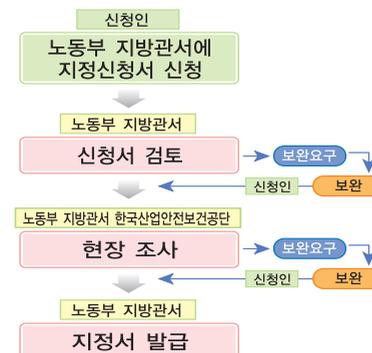
※ 제도 시행후 6개월('10.2.6)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축정기관"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석면조사업무 수행이 가능

### ▶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인력기준 ※ (가, 나, 다 각각 보유)	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장비기준	① 지역시료 채취펌프 ② 유량보정계 ③ 입체현미경 ④ 편광현미경 ⑤ 위상차현미경 ⑥ 흡 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⑦ 진공청소기(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⑧ 아세톤 증기화 장치 ⑨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⑩ 필터 여과추출장치 ⑪ 저울(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 인력기준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말함

### ▶ 석면조사기관 지정절차



※ 제도시행('09.8.7)전인 '09.7월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을 위한 "가 접수" 업무 진행

## 2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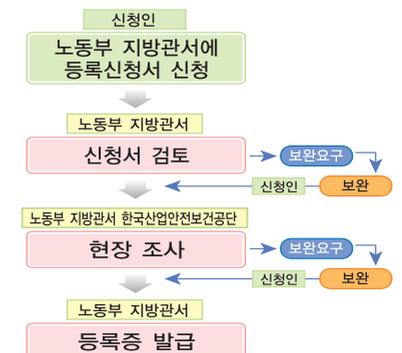
※ 단,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됨

###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가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음

###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절차



※ 제도시행('09.8.7)전인 '09.7월부터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을 위한 "가 접수" 업무 진행